

영등포구의회
제1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6. 10. 25.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民 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65호로 2016년 10월 1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삭제하고, 「지역보건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재정비함.

3. 주요내용

- 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근거를 변경함. (안 제1조)
- 나. 과태료 부과대상 및 부과기준을 「지역보건법」에 맞게 정비함.
(안 제2조, 안 제3조)
- 다.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하도록 함. (안 제4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을 반영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 되어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에서는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2015.5.18)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조항이 법 제26조제2항에서 법 제34조제2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지역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대상과 지방자치단체에게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음.
- 안 제4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함.
- 아울러,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 불복, 강제징수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모두 삭제하여 법 체제를 9개 조항에서 4개 조항으로 간결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였음.

-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에 관한 절차를 두는 것은 불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규정하는 경우 해석상의 혼란만 초래할 것인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본 조례개정은 바람직한 입법사례로 보이며, 향후 집행부에서는 상위법령과 배치되거나 중복되는 규정 등 입법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규정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함.

참 고 자 료

1

지역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2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제33조(개설 등)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